瑞山市事務의 邑·面·洞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審 査 報 告 書

1. 審査經過

가. 提出日字 : 1998. 12. 17

나. 提 出 者 : 瑞 山 市 長

다. 回附日字 : 1998. 12. 18

라. 上程日字 : 1998. 12. 21

2. 提案說明要指(提案說明: 稅務課長 安光來)

가. 提案理由

○ 현행 읍·면·동장에게 세무과소관 업무중 너무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그 위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현실성이 결여된 위임사무와 근거법령이 없는 사무등을 바르게 조정하여 위임하므로써 그 권한과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나. 主要骨子

○ 현행 읍·면·동 위임사무중 시에서 직접처리함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되는 사무를 시의 사무로 환원

○ 다른 조례·규칙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사무와 사무처리의 법적 근거가 없거나 폐지된 사무 삭제

○ 현행 위임조항중 너무 포괄적으로 위임된 「시세의 부과 및 징수」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위임.

3.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

○ 세무과소관 업무중 읍·면·동장에서 위임된 업무가 너무 포괄적이고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현실성이 결여된 업무와 근거 법령이 없는 사무등을 바르게 조정하여 그 권한과 책임한계를 명확히 한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됨.

4. 主要質疑 및 答辯要指 : 생 략

5. 討　　論 : 없었음.

6. 少數意見 : 없었음.

7. 審査結果 : 원안대로 가결

의안번호	제 39 호
의결년월일	1998. 12. 24 (제 36 회)

서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년월일	1998. 12. 11

서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9

제출년월일 : 1998. 12. 17.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1. 제안이유

현행 읍·면·동장에게 위임된 세무과 소관업무중 너무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그 위임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현실성이 결여된 위임사무와 근거법령이 없는 사무등을 바르게 조정하여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여 업무의 효율을 기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현행 읍·면·동 위임사무중 시에서 직접 처리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아래의 사무를 시의 사무로 환원함(안 별표1,2)

위 임 사 무 명	환 원 사 유
시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 및 판매소 위치변경 승인	조례상으로 읍·면에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인증기 사용등으로 내용상 시에서 관장하고 있으므로 사실과 같게 읍·면의 위임사무에서 삭제하여 시의 사무로 하려는 것임.
지방세 징수유예 증명	징수유예 결정을 시에서 처리하므로 업무의 연계성을 기하기 위하여 환원
수입증지 수불	인증기 사용으로 수입증지는 사실상 사용하지 않으므로 시에서 처리함이 타당
부동산 과세표준액 조사사무	과세표준액 처리사무의 축소로 업무의 성격상 시에서 처리함이 타당
농지세 감면신청	다른 세목의 지방세 감면과 같이 시에서 처리함이 타당

나. 사무처리의 법적 근거가 없거나 폐지된 「지방세 비과세 증명, 영업의 개업신고, 영업의 휴업신고, 영업의 폐업신고, 영업장소의 경영에 대한 상속 또는 승계의 신고, 영업의 경영에 대한 신고사항 변경신고, 업체 소재증명」의 사무를 삭제함(안 별표 1)

다. 다른 조례·규칙에 이미 읍·면·동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아래의 위임사무를 삭제함(안 별표 1,2)

사 무 명	삭 제 이 유
당해 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결정 및 감액결정	재무회계규칙에 징수관인 읍·면·동장에게 소관 세외수입금에 대한 징수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지적공부 부본의 열람	지적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제8조에서 부본의 정리 및 열람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폐기물 수집등 부과징수	서산시 폐기물 관리조례로 읍·면·동장에게 위임되어 있음
불용품 매각처리	서산시물품관리조례 및 동시행규칙으로 읍·면·동장에게 위임되어 있음

라. 현행 위임조항 중 너무 포괄적으로 위임된 「시세의 부과 및 징수」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위임함(안 별표 1,2)

3. 참 고

가. 근거법령

○ 서산시세조례 제10조(부과·징수사무 위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인 가

○ 충청남도지사의 표준안(세정13400-1332, 세정13400-923)

서산시세조례 제 호

서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중 세무분야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1의 세무분야란 다음에 회계분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 관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회계분야	1	영달예산 범위안에서의 지출원인 행위와 지불명령	
	2	영달예산 범위안에서의 건설공사 집행	
	3	지정 공공시설과 재산의 관리 및 사용허가	
	4	지정 공공시설과 재산의 임대차계약 (단,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시유 잡종재산 대부계약 (단, 재산 평가액 1건당 5천만원, 토지에 있어서는 1,650제곱미터 이하)	

별표2중 세무분야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소 관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세무분야	1	시세 납세고지서, 독촉장, 최고장 등의 송달	지방세법 제51조, 제52조
	2	시세 징수금의 징수	
	3	주민세, 농지세, 사업소세 신고 처리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213조, 제214조, 제215조, 제250조
	4	납세관리인 지정	지방세법 제37조 제3항 및 시세조례 제31조
	5	지방세 미과세 증명 발급 (단, 읍·면 신청분에 한함)	지방세법 제3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6	지방세 완납증명 발급 (단, 읍·면 신청분에 한함)	지방세법 제3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7	시세 100,000원미만 결손처분	지방세법 제30조의3, 동법 시행령 제14조
	8	시세에 부가된 국세의 징수	교육세법 제10조 및 농어촌 특별세법 제8조
	9	시세와 관련된 다음의 대장비치 및 정리 가. 재산세 관련대장 나. 농지세 관련대장 다. 종합토지세 관련대장 라. 사업소세 관련대장	

소 관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세무분야	10	개간·간척등으로 인한 비과세 신청 접수	지방세법 제201조, 시세조례 제43조
	11	시세조례에 의한 신고규정 중 다음의 신고처리	
		가. 재산세 비과세(감면) 적용자의 신고	시세조례 제28조
		나. 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시세조례 제29조
		다. 건축물에 대한 신고	시세조례 제32조
		라. 선박에 대한 신고	시세조례 제33조
		마. 농지의 변동 신고	시세조례 제47조
		바. 토지에 대한 신고	시세조례 제79조
		사. 사업소용 건축물 신고	시세조례 제99조
		아. 사업소세 비과세(감면) 적용자의 신고	시세조례 제100조
	12	시장사용료 부과징수	

〔별표 2〕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소 관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세무분야	1	시세 납세고지서, 독촉장, 최고장등의 송달	지방세법제51조, 제52조
	2	시세징수금의 징수	
	3	농지세 신고 처리	지방세법제213조, 제215조
	4	납세관리인 지정	지방세법 제37조제3항 및 시세조례 제31조
	5	지방세 미과세 증명 발급 (단, 동지역 신청분에 한함)	지방세법 제3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6	지방세 완납증명 발급 (단, 동지역 신청분에 한함)	지방세법 제3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7	시세 100,000원미만 결손처분	지방세법 제30조의3
	8	시세에 부가된 국세의 징수	교육세법 제10조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8조
	9	시세와 관련된 다음의 대장 비치 및 정리 가. 농지세 관련대장	시세부과징수규칙 제111조
	10	개간.간척등으로 인한 비과세 신청 접수	지방세법 제201조, 시세조례 제43조
	11	시세조례에 의한 신고 규정중 다음의 신고 처리	

소 관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세무분야		가. 건축물에 대한 신고	시세조례 제32조
		나. 농지의 변동 신고	시세조례 제47조
	12	시장사용료 위탁징수 계약 (단, 시장의 사전 승인)	시조례

개 정 전 · 후 대 비 표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개 정 전	개 정 후	개 정 사 유
1. 시수입증지 판매인 지정 및 판매소 위치변경 승인 (지방세법 제37조제3항)	<삭 제>	○ 조례상으로 읍.면.동에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인증기 사용등으로 내용상 시에서 관장하고 있으므로 사실과 같게 바로잡으려는 것임
2. 납세 관리인 지정 (지방세법제37조제3항)	○ 현행 존치	○ 납세의무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등을 시에서 직접 파악하기 곤란
3. 지방세 미과세 증명 (지방세법제39조, 시행령 제22조)	○ 지방세 미과세 증명 발급 (단, 읍.면 신청분에 한함) (지방세법 제3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22조)	○ 지방세 관련 제증명 발급을 시나 읍.면에서 모두 발급될 수 있도록 하여 민원편의 도모
4. 지방세 완납증명 (지방세법 제39조, 시행령 제22조)	○ 지방세 완납증명 발급 (단, 읍.면 신청분에 한함) (지방세법 제3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21조)	○ 지방세 관련 제증명 발급을 시나 읍.면에서 모두 발급될 수 있도록 하여 민원편의 도모
5. 지방세 징수유예 증명 (지방세법 제39조, 시행령 제22조)	<삭 제>	○ 징수유예 결정을 시에서 처리하므로 업무의 연계성을 기하기 위함
6. 지방세 비과세 증명 (지방세법 제39조, 시행령 제22조)	<삭 제>	○ 지방세법에 근거조문 없음 "증명"이 아니라 "확인"임 (시에서 확인 가능)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개 정 전	개 정 후	개 정 사 유
7. 영업의 개업신고 (지방세법 제145조, 시세조례)	<삭 제>	○ 근거조문 폐지
8. 영업의 휴업신고 (지방세법 제145조, 시세조례)	<삭 제>	○ 근거조문 폐지
9. 영업의 폐업신고 (지방세법 제145조, 시세조례)	<삭 제>	○ 근거조문 폐지
10. 영업장소의 경영에 대한 상속 또는 승계의 신고 (지방세법 제145조, 시세조례)	<삭 제>	○ 근거조문 폐지
11. 영업의 경영에 대한 신고사항 변경 신고 (지방세법 제145조, 시세조례)	<삭 제>	○ 근거조문 폐지
12. 가옥의 신축신고 (동법 제192조)	<삭 제>	○ 납세의무자의 각종 신고의무 사항만을 묶어 따로 정함
13. 가옥대장의 정리 (시세조례)	<삭 제>	○ 시세와 관련된 각종 대장의 비치 및 정리에 관한 사항만을 묶어 따로 정함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개 정 전	개 정 후	개 정 사 유
14. 개간 농지세 면제신청 (동법제201조,시세조례)	○ 개간,간척등으로 인한 비과세 신청 접수 (지방세법 제201조, 시세조례 제43조)	○ 위임사무의 명칭 및 근거법조항을 명확히 함
15. 농지세 감면신청 (지방세법제202조, 시세조례)	<삭 제>	○ 농지세에 대한 감면도 다른 세목의 지방세 감면과 같이 시장으로 일원화함이 바람직함
16. 국세의 위탁 징수	○ 시세에 부가된 국세의 위탁징수 (교육세법 제10조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8조)	○ 위임사무의 명칭을 정확히 함
17. 취득세 자진신고	<삭 제>	○ 도세임으로 읍.면.동 위임규칙으로 정해야 할 사항임
18. 업체 소재 증명	<삭 제>	○ 근거법령 없음
19. 지적공부 부본의 열람	<삭 제>	○ 지적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8조에 규정되어 있음
20. 영달예산 범위안에서의 지출원인 행위와 지불명령	<삭 제>	○ 회계분야로 이동
21. 영달예산 범위 안에서의 건설공사 집행	<삭 제>	○ 회계분야로 이동
22. 지정공공시설과 재산의 관리	<삭 제>	○ 회계분야로 이동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개 정 전	개 정 후	개 정 사 유
23. 지정 공공시설과 재산의 사용허가	<삭 제>	○ 회계분야로 이동
24. 지정 공공시설과 재산의 임대차 계약 (단,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삭 제>	○ 회계분야로 이동
25.수입증지 수불	<삭 제>	○ 읍.면.동에 현재 인증기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불필요
26. 시장사용료 위탁 징수 계약 (단, 시장의 사전 승인) (지방세법 제29조, 충청남도 재회계규칙)	○ 시장사용료 부과 징수	○ 해미면만 시행되고 있음
27. 지방세 100,000원 미만 결손처분 (제33조 및 제34조)	○ 시세 100,000원미만 결손처분 (지방세법 제30조의3)	○ 도세는 읍.면.동 위임규칙으로 하며 근거법조항을 바로 잡음
28. 당해 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결정 및 감액결정 (지방세법 제111조, 동법 제187조, 재무회계규칙 제167조)	<삭 제>	○ 재무회계규칙 제3조제1항 제5호 및 동규칙 제32조에 의거 이미 읍.면.동장에게 권한 부여
29. 부동산 과세표준액 조사 사무(지방재정법시행령제63조)	<삭 제>	○ 지방세법 제111조, 제187조의 과세표준액 조사사무는 광업권 및 어업권 조사에 한정되어 그 업무량이 많지 않으므로 시 처리가 바람직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개 정 전	개 정 후	개 정 사 유
30. 불용품 매각 처리	<삭 제>	○ 서산시물품관리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서 위임
31. 군유 잡종재산 대부허가 (다만, 재산평가액 1건당 5,000만원 토지에 있어서는 1,650제곱미터 이하)	<삭 제>	○ 회계분야로 이동
<신 설>	○ 시세 납세고지서, 독촉장, 최고장 등의 송달(지방세법 제51조, 제52조)	○ 시세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임사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신 설>	○ 시세 징수금의 징수	○ 시세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임사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신 설>	○ 주민세, 농지세, 사업소세 신고 처리 (지방세법 제71조, 제177조의2, 제214조, 제215조, 제250조)	○ 시세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임사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신 설>	○ 시세조례에 의한 신고규정 중 다음의 신고처리 가. 재산세 비과세(감면)적용 자의 신고(시세조례 제28조) 나. 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시세조례제29조)	○ 시세 조례에 규정된 신고 처리 사항중 읍.면.동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구분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개 정 전	개 정 후	개 정 사 유
	다. 건축물에 대한 신고 (시세조례제32조) 라. 선박에 관한 신고 (시세조례 제33조) 마. 농지의 변동 신고 (시세조례 제47조) 바. 토지에 대한 신고 (시세조례 제79조) 사. 사업소용 건축물 신고 (시세조례 제99조) 아. 사업소세 비과세(감면) 적용자의 신고 (시세조례 제100조)	
<신 설>	○ 시세와 관련된 다음의 대장비치 및 정리 가. 재산세 관련 대장 (시세부과징수규칙 제100조) 나. 농지세 관련 대장 (시세부과징수규칙 제111조) 다. 종합토지세 관련대장 (시세부과징수규칙 제124조) 라. 사업소세 관련대장 (시세부과징수규칙 제128조, 제129조)	○ 읍.면.동에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할 각종 대장을 명확히 구분

개 정 전 · 후 대 비 표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개 정 전	개 정 후	개 정 사 유
1. 시장사용료 부과 징수 (시조례)	○ 시장사용료 위탁징수 계약	○ 활성동 동부시장만이 위탁 처리하고 있음
2. 수입증지 수불 (시조례)	<삭 제>	○ 읍.면.동에 현재 인증기 사용으로 불필요함
3. 폐기물 수집등 부과징수 (시조례)	<삭 제>	○ 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로 읍·면·동장에게 위임
<신 설>	○ 시세 납세고지서, 독촉장, 최고장 등의 송달 (지방세법 제51조, 제52조)	○ 시세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임사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신 설>	○ 시세 징수금의 징수	○ 시세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임사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신 설>	○ 농지세 신고처리 (지방세법 제177조의2)	○ 시세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임사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신 설>	○ 납세 관리인 지정 (지방세법 제37조제3항 및 시세조례 제31조)	○ 납세의무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등을 시에서 직접 파악하기 곤란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개 정 전	개 정 후	개 정 사 유
<신 설>	○ 지방세 미과세 증명 발급 (단, 동 신청분에 한함) (지방세법 제3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 지방세 관련 제증명 발급을 시나 읍.면.동에서 모두 발급될 수 있도록 하여 민원편의 도모
<신 설>	○ 지방세 완납증명 발급 (단, 동 신청분에 한함) (지방세법 제3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 지방세 관련 제증명 발급을 시나 읍.면.동에서 모두 발급될 수 있도록 하여 민원편의 도모
<신 설>	○ 시세 100,000원미만 결손처분 (지방세법 제130조의3)	○ 체납자와 결손처분 대상자의 증가로 100,000원미만의 소액은 읍.면.동에서 결손처분함이 바람직함
<신 설>	○ 시세에 부가된 국세의 징수 (교육세법 제10조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8조)	○ 시세징수금 징수의 위임으로 읍.면.동에서 처리해야될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
<신 설>	○ 시세와 관련된 다음의 대장 비치 및 정리 가. 농지세 관련대장 (시세부과징수규칙 제111조)	○ 농지세 신고처리 사무의 위임으로 이와 연계하여 읍.면.동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
<신 설>	○ 개간,간척등으로 인한 비과세 신청 접수 (지방세법 제201조, 시세조례 제43조)	○ 재해등 피해 발생시 신속한 처리를 하기 위함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개 정 전	개 정 후	개 정 사 유
<신 설>	○ 시세조례에 의한 신고규정 중 다음의 신고 처리 가. 건축물에 대한 신고 (시세조례 제32조) 나. 농지의 변동 신고 (시세조례 제47조)	○ 건축물 신고 처리와 농지세 신고처리가 읍.면.동에 위임되어 있음에 따라 이와 연계하여 처리코자 함